

# 소 장

원 고 O O O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

피 고 △△세무서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###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

#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○○. ○. ○.자 증여세 ○○○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 청 구 원 인

1. 사건개요

피고는 원고가 20○○. ○. ○.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번지 대지 ○○○평방미터를 대금 ○○○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○. ○.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데 대해 원고의 매수자금을 남편인 소외 □□□□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청구취지와 같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.

2. 불복사유

그러나 위 매수자금은 원고가 19○○. ○.경부터 ○○동 소재 ○○시장에서 식당

을 경영하며 얻은 수입금과 시장에서 계를 조직·운영하여 얻은 계금을 적합 로 가입하여 얻은 수익금 등을 합하여 충당한 것으로 남편으로부터 증여한 것이 아닙니다.

#### 3. 결 어

사안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와 소외 □□□이 남편이라는 이유로 사실조사를 하지도 아니한 채, 위 매수대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2조의 의제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기에 이에 원고는 피고의부당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.

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납세고지서

1. 갑 제2호증 세액계산명세표

#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납 부 서 1통

2000년 0월 0일

원 고 ㅇ ㅇ ㅇ (인)

# ○ ○ 행정법원 귀중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 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제9조 ~ 제34조
비 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방법 및 기 간	· 항소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 396조)		

#### 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제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 법원임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#### 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제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